

김선화 / 5월+6월 / 실전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2033	22.5	6.5	19.5	11	59.5	1	2.04%	49
542521	17	10.5	19.5	11	58	2	4.08%	
541764	17.5	9	17.5	13.5	57.5	3	6.12%	
541984	16.5	11.5	18.5	10.5	57	4	8.16%	
541738	16	8	21	10.5	55.5	5	10.20%	
542706	17	8.5	18	12	55.5	5	10.20%	
541733	18	9	17.5	10.5	55	7	14.29%	
542424	17	11.5	16	9.5	54	8	16.33%	
543093	17	8.5	18.5	8.5	52.5	9	18.37%	
542951	17	8	16	11.5	52.5	9	18.37%	
542140	16.5	8.5	15.5	11.5	52	11	22.45%	
542615	14.5	11	16	10.5	52	11	22.45%	
541787	16.5	11	14.5	9.5	51.5	13	26.53%	
544348	17	6.5	17	11	51.5	13	26.53%	
544817	17.5	7	15.5	11.5	51.5	13	26.53%	
541899	16.5	7	16.5	11	51	16	32.65%	
542824	18	9.5	16	7.5	51	16	32.65%	
543513	17	2.5	18	13	50.5	18	36.73%	
542650	15.5	8.5	15.5	10.5	50	19	38.78%	
543675	14.5	6	15.5	14	50	19	38.78%	
542690	18	4	18.5	9	49.5	21	42.86%	
543817	13	7	19.5	10	49.5	21	42.86%	
543347	14.5	7	17	10	48.5	23	46.94%	
535192	17.5	4	14.5	12	48	24	48.98%	
542660	15	8	16.5	8.5	48	24	48.98%	
541776	15	8.5	13.5	10.5	47.5	26	53.06%	
542812	17	8	14.5	8	47.5	26	53.06%	
542787	15.5	8.5	15.5	8	47.5	26	53.06%	
544137	15	5	16	10.5	46.5	29	59.18%	
544542	19.5	8	9.5	9	46	30	61.22%	
543546	14.5	5	15	10.5	45	31	63.27%	
544535	17	4.5	12	11.5	45	31	63.27%	
544722	15	3.5	15	11	44.5	33	67.35%	
543322	16.5	5.5	14.5	7.5	44	34	69.39%	
544055	16	4	18	6	44	34	69.39%	
544656	17	5.5	14	7.5	44	34	69.39%	
541740	15.5	9	14	5	43.5	37	75.51%	
544814	17	4	13.5	9	43.5	37	75.51%	
541184	14	5.5	14	9.5	43	39	79.59%	
544469	16.5	7.5	11.5	6.5	42	40	81.63%	
535218	16	6.5	14.5	4.5	41.5	41	83.67%	
544517	15.5	5.5	14.5	6	41.5	41	83.67%	
543496	16	6.5	11	7	40.5	43	87.76%	
541783	11.5	7.5	12	9	40	44	89.80%	
535647	16.5	5	11.5	6.5	39.5	45	91.84%	
544353	14	2.5	13.5	9	39	46	93.88%	
535325	14	7	10	0	31	47	95.92%	
544295	9	2	8.5	7.5	27	48	97.96%	
535255	13	0	12	1.5	26.5	49	100.00%	

김선화/5월/실전GS/7회/1번	채점자
	오규해

1. 전반적인 총평

이번 7회 1문은 익숙한 느낌의 논점이면서도 제대로 풀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설문 1은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설문 2와 3은 여러 답안으로 많이 갈렸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익숙한 질문인 침해 여부와 구체적인 침해사유를 검토하라는 것으로, 침해 판단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이용행위인 복제와 전송에 대해 검토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괄호에서 ‘甲 이모티콘’은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하였으므로, 유효한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하시더라도 한두 줄로 짧게 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판단해주실 때 판례도 잘 적어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사안 포섭용 내용들을 이용해 포섭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용행위 중 복제 여부를 검토할 때, 乙이 甲의 이모티콘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하트 대신 하트인형, 36프레임 대신 24프레임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수정증감이 있는 경우의 판례’를 떠올리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론에서는 복제행위와 전송행위를 했으므로 복제권(제16조)와 ‘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와 범위를 검토하는 것인데 여기서 범위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제741조를 주었으니 그대로 적어주시고, 저작물의 무단 이용도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시하는 판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통해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으니 그 금액, 즉 범위를 알려주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이라 설시하는 판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크게, ① 저작물 이용도 부당이득인지 ② 부당이득 금액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금액인지를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민법상 소멸시효와 상법상 소멸시효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산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여부로 점수가 많이 갈렸습니다.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딱히 문제 내용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 등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문제지에 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꼭 적혀있어서 짚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조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즉, 매일 매일이 새로운 기산점이고 소멸시효도 날마다 새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니 숙지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일자와 지나지 않은 일자로 나누어 결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시점을 2025년 5월 23일로 하지 않고 실제 시험 일자라든지 또는 7월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셨어도 동일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이제 저작권 실전 GS가 끝났습니다. GS 양으로는 이정도면 합격에 정말 충분하고도 넘친다 생각하고, 저작권법은 시험일까지 감 유지만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에서 출제된 논점들만이라도 조금씩 회독하면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62기 변리사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7회/2번	채점자
	조은석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언급	1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혹은 처분문서) 해석 판례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계약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1	
		사안포섭① - 乙의 권리 및 의무 2조 및 *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을 언급	1	
		사안포섭② - 乙의 권리 및 의무 1조, 甲의 권리 및 의무 1조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함을 언급	1	
		사안포섭③ - 甲의 권리 및 의무 2조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내'에만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을 언급	1	
		사안포섭④ - 甲의 권리 및 의무 3조에 의해 '이 사건 중간본'을 토대로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乙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함이 타당함을 언급	1	
		사안포섭⑤ - 甲의 권리 및 의무 4조와 관련, 이 사건 극본은 전체로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착수금을 기계적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중간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언급	1	
2	2	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 언급	1	6
		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언급	1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의 의미 판례 (실질적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직접 명령 받은 것,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의 것)	1	
		사안포섭 - 업무상저작물X, 甲 주장 부당	1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도급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예외규정인 만큼 제한적으로 해석, 도급계약까지 확대 내지 유추해석X)	1	
사안포섭 - 업무상저작물X, 甲 주장 부당	1			

1. 설문 1

설문 1은 채점기준대로 채점 시 점수가 낮아 모든 분들에게 3점을 더 드렸습니다. 따라서 답지에 기재된 점수보다 통계표에 기재된 점수가 3점 높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일일이 분석하여 사안 포섭해야 하는 낯선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乙의 권리 및 의무 두 번째 조항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甲의 권리 및 의무 첫 번째 조항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甲의 권리 및 의무 두 번째 조항은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판례 태도에 따라 '이 사건 계약 기간 내' 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언급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전통적인 논점이어서 설문 1보다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2에 소개된 판례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이므로, 이번 기회에 챙겨가 주세요!

7회차 GS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선화/5월/실전GS/7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설문 2에서 침해 여부를 검토하실 때 이 사건 벽화의 이용행위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건 그림’과 ‘이 사건 벽화’가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라 헛갈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은 이해하지만, 2차적저작물의 요건 중에서 “새로운 창작성 부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흔한 형태의 꿀벌”들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것만으로 남들의 표현과 다른 창작적 표현이 부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주 논점 검토 시 복제권과 전시권의 침해로 보셨어야 합니다.

설문 3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의 소진과 관련해서 대가를 받고 넘긴 작품의 처분에 대해 전체소각을 처분행위로 보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와 별개로 인격권일반의 침해까지 연결하여 올바르게 결론까지 내주셨어야 하는 통판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모르셨다면 이번에 꼭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2. 4문 채점평

설문 1의 경우 AI가 창작한 산출물의 저작물성 판단이 애매한데,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푸신 분들은 설문 2에서 이 사건 그림을 그냥 단독저작물로 보아 甲의 저작물로 판단하고 푸신 분들께 점수를 전부 드렸고, 만일 설문 1의 산출물을 저작물로 보시고 폰 경우에는 설문 2에서 2차적저작물로 판단하여 푸셨다면 점수를 전부 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특히 설문 1에서 저작물에 필요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은 인간의 것이라는 판례를 제시하고 가정하에 케이스를 나누어 서술하신 분의 답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눈에 띄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제 1>

I 상용 (1)

1 신해권 선택

① 유출된 저작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유출된 유출물도
③ 의거성이 인정되고 ④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이용
행위를 했어야 한다.

2 실용성 유출권 선택

(1) 판단기준 (외국)

"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실용성 유출권 인정의
기준으로서 유출물의 표적성을 가리켜 대외적·실용적
행위"

(2) 사안의 종류

1) 무 이윤행위 유출물의 표적성 선택

무이윤행위와 관련하여 두 경우 가능 가능 가설에 관한 여부
를 이른 상태로 무의와 함양을 가설은 실용성 유출물 무의
무의-함양이 수요 반대로 유출물 유출물 유출물 유출물
이윤행위와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2) 이윤 - N 이윤행위 위 표적성의 무의 여부

N 이윤행위 개입 개입 개입 개입 개입 개입 개입 개입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이윤 이윤

34, ③ 위의 같은 종류의 신청 내용이 불합치 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대로 기간의 10분의 3을 초과 한다"

(3) 부당이득환급위원의 신청으로 기간 연장 (제외)
 "부당이득 환급 신청을 접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합치 한 경우"

(4) 신청의 경우

1) 신청으로 기간 연장
 신청에서부터 20이 신청서 제출을 받았거나 그에 관한
 결정은 부당이득환급에 관한 신청서 제출을 신청한 인원에
 관한 정보가 되어 양자, 신청 10일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
 한다

2) 신청으로 기간 연장 도다 신청
 2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남이다
 법률상 권리 있는 이들을 위한 바, 남이다 부당이득환급위원
 발령부터, 23부터 신청서 제출한다. 다자서 신청 신청
202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부당이득환급
위원 신청서 제출 도다 신청.

2 신청의 경우

①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당이득환급위원
 의 신청으로 도다 신청, ②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당이득환급위원 위원 신청 신청 신청

22.5

윌버스 변리사학원! 윌버스 변리사학원!

[문제 2] 8.5

I. 실문 1)

1. 논거 정리.

계약체결의 원인에 따른 그 조항의 계약 조항의
기속주체로서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계약 내용의 유효 (취체)

취체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계약은 무효의 기래
사실을 이유로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의사 그 계약의
경위 등의 사정상으로 조항의 타당성을 조항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3. 계약 내용의 불공정 (취체)

취체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 경위는 그 양도인이 잘 통찰에 관한
계약의 체결은 각각 재산권 양도 계약이 아니라
동등적인 이윤리적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4. 사안의 경위

① 甲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갑판은 국분을 양도인이 이 사건 조항을 계약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는 채권
동등권 경위 그대륙의 모두 보일한다'고 본다.

③ 그로 인하여 계약 체결을 보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인 계약이!

사안은 계약의
간단하다!

계약의
내용
조항
조항!
중요!

④ 때문에 계약채의 효력으로 이 A권 계약에 의한
甲의 권리는 소멸한 바, 그 권력을 이유로 드림으로
계약한 권리를 지리 않는다.

⑤ 계약의 불이행 위계가 명확한 바, 甲의 무관한
그 계약이 효력에 미치지 못해 부당하다.

표 심문 (2) 5.5

1. 업무상 거래물 계약 (채 제2조 제3항)

업무상 거래물은 법인 그 밖의 사외인의 기획리에
법인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 업무상 작성한 거래물
을 말한다.

2. 업무상 거래물 계약자 (채 제13조)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업무상 거래물의 계약자는
계약 또는 근무취급 등에 다른 정황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3. '기획'의 범위 (취제)

취제는 업무상 법인 또는 사외인의 기획리에
거래물은 작성한 바 위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획은 모두 포함하며, 부외적 기획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외의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4. 업무 외행위의 업무행위 (위법죄)

위법죄는 업무상 외행위의 업무에 해당되는 범위는 타당적·간접적 관계에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한 동행위이고 그 범위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동행위한다.

5. '이 사건 중간본'이 업무상 외행위의 여부(소극)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3급계약

이 사건 계약은 이윤회락 계약이므로 그 계약별 인 주보 집필을 관재하는 3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2) 3급계약에 업무상 외행위 인정여부 (위법죄)

위법죄는 업무상 외행위를 관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규정인 보 일경위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3급 계약의 정치는 권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중간본'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3급계약의 산출물로서 그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관재권을 인정하므로 그의 외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외행위의 위 수 없다.

6. 심문의 태결

'이 사건 중간본'은 업무상 외행위의 예외 범위의 규정이 인정된다.

200

[문제-2]

3.5

I. 설문(1) 3.5 **인증중이!**

1. 의사행사의 해석 사례

당사자간 의사행사의 해석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 의사행사를 하게 된 동기 및 범위, 목적,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계약의 유효성 검토

(1) 권리

甲이 2024년 12월까지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방송표현성을 발휘 불허는 경우, 乙은 이 사건 **계약의 해리를 통보**할 수 있다.

(2) 통보가 된 경우

계약 해리 사유가 발생하여 정당하게 해리 통보된 경우,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그때부터 모두 소멸한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2024년 12월까지 이 사건 드라마 방송표현성을 발휘 불허였고 乙은 甲에게 계약해리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리되었고 계약에 따른 甲과 乙의 권리의무는 해리된 **때부터 모두 소멸한다.**

3. 甲의 주장 타당성 검토

(1) 계약상 甲의 권리

甲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乙이 집행한** 국봉은 이용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2)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현재 甲은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간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설문의 해결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甲 주장은 부당하다.

+0.5

II. 설문(2)

1. 창작자 즉의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제2조 2호),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행정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2항)

2. 업무상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은 ①법인·단체 그 밖의 사업자의 기획 하에
- ②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며(제2조 3호)
-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 ⑤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의 저작자가 된다(제19조)

3. 甲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甲과 乙은 실질적 외화-감독관계는 아닌바, 甲이 乙에게 정필은 요구한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으로 보인다.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느니 문제된다.

(가) 작성

① 도중인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었는바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견해유 ② 창작과 주의 원칙에 따라 수중인의 저작과라는 견해
가 있다.

(나) 표시

일반적으로 도중계약에서는 선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없으
므로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0.5

판례 원론대로 변
태!

(다) 검토

창작과 주의 원칙의 예외인바 지나친 통제 해석할 수 없으
므로 표시의 태도는 타당하다.

0.5

(예) 소결

근로 甲의 수중인인 별, 甲과 선질적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간본은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부당하다.

[끝]



이 작품이 독자 감상자의 인식내용
인식여부
감정비판

[문제 -3]

21

I. 실문 (1)

1. 저작물이다 (22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예술저작물이다 (4조 1항 4호)

인간의 사상·감정을 회화, 조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3. 창작성 판단 방법 (411조)

㉠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님 ㉡ 저작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해 창작적이고 특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4. 결론

㉠ "이 사건 그림"은 표현의 양을 표현성, 분홍성, 보라성, 초록성 등으로 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잘 어울리는 네비의 내부를 배치하여

㉡ "저작자 A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이고 특창적으로 표현됨"이다

㉢ 저작자 A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 "예술저작물"에 해당한다."



II. 실권 (2)

1. 저작권 침해 요건

① 무단한 저작물, ② 양행위, ③ 의기성, ④ 실권저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 각급

(1) 판단방법 (判例)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에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대비해야 한다.

(2) 사안

Z의 "이 사건 특허"는 K의 "이 사건 그림"의 창작적 표현 부분인 "각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생각배치"를 충実に 가장 큰 비중으로 배치하였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3. 의기성 인정 여부 - 각급

(1) 판단방법 (判例)

의기성이 인정되는지는 "창작적 표현" 부분만 아니라, "창작적이지 않은 표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의기성 추정방법 (判例)

① 의기성은 "좁은가능성"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추정되며 ② 독립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경으로 의의성을 유추할 수 있다.

(3) 사안

① "이 사건 그림"은 형태에 현저한 유사 배경으로 사용되어 매우 유명하므로 2의 '유사가능성'이 있고,

② "이 사건 그림"과 "이 사건 벽화"는 "완전히 유사성"이 있으므로

③ "2의 의의성은 추정된다."

4. 2의 "이 사건 벽화" 제작이 복제 권리 여부 - 3각

(1) 복제 권리 (2조 2호)

제작자를 인쇄, 복사 등 방법으로 유통물이 표절되거나 게재하는 것이다.

(2) 원저작물 말권 행사 (제1조)

반드시 원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원저작물의 "항각각요한 부분의 원본만을 복제하여도 복제 행위이다."

(3) 사안

2이 "이 사건 그림"의 나머지 네마리는 복제 권리 없음에도 "항각각 표현인 2각이 일부분을 복제하였으므로";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5. 후과 2 이용행위 정도

(1) 2의 이용행위 상기 정도일듯

① 2은 "이 사건 2명"을 "복제 (2조 22항)" 하였다

② 후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배포 (2조 23항)" 하였다.

(2) 후의 이용행위

후는 "이 사건 2명"의 복제물인 "이 사건 복제"를
음성권 내복 복면에 설치하여 "전시" 하였다.

6. 결론

① 2은 A의 "복제권 (16조), 배포권 (20조)" 침해하였고,

② 후는 A의 "전시권 (19조)" 침해 하였다.

IV 실문 (3)

1. 문제점

① 후이 2 동일성유치권 침해 하는지, ② 아니라면 2의
인격권 침해 하는지 검토한다.

2. 2의 동일성유치권 침해 여부 - 조류

(1) 동일성유치권 2의 (13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기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2) 동일성 유극한 침해 요건

① 원지각물의 동일성이 손상되는 개념이 있고, ② 그러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지각물의 본질적 특징이 적당적으로 강득되어야 한다.

(3) 소위권자의 처분 행위가 동일성유극한 침해 주장 거부 - 소극

1) 학설

① 긍정설

동일성유극한 인격적 척이므로 소위권에 대해 가능하다.

② 부정설

소위권은 물건이므로 지각물의 복제물이 생성된 이상 소위권의 처분 행위에 대해 할 수 없다.

2) 취례

소위권의 소위를 처분 행위가 "지각권자의 동일성유극한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검토

원지각물이 전부 파괴된 이상 지각물의 본질적 특징이 적당적으로 강득되지 않으므로 취례가 타당하다.

(4) 소결

① 申은 "이 사건 중경화"의 소위권이고, 申의 처분 행위에 2이 대해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② 申은 "이 사건 중경화"를 과방게 권하여 진복 소각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중경화"의 본질

특성이 직접적으로 강득되므로 옳으므로,

㉔ ㉕의 선택항기는 "㉔의 동일성유리권 침해 아니다."

3. ㉔의 인격권 침해 여부 - 작곡

(1) 원시권

저작물의 파외 행위가 동일성 유리권 침해는 아니나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는
인격권 침해가 성립한다.

(2) 사안

㉔은 ㉕의 저작물을 선택하는 행위를 "SNS에 생중계"
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과 ㉕의 인격권 침해하는 행위로
"㉔의 인격권 침해이다."

4. 결론

㉔ ㉕의 선택항기는 "㉔의 동일성유리권 침해 아니다."

㉔ "㉔의 인격권 침해이다."

[답]

[문제 4]

1. 선택

1. 시지

인상력에 의해 선택된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표상된다

2. 인상력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정답

(1) 지각 (2) 지각

인상의 사상이란 것은 지각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지각의 방법 (특히)

정답이 양의 것은 인상의 것은 이미지

사상이나 지각에 대한 지각과 과정의

두가지인 표현은 지각 과정에 의해

지각의 사상이 지각

지각의 방법 표현은 지각 과정에 의해

14 + 인상력에 의한 지각 과정

15

법률의 관행은 위와 인권의 사생활 또한 가능하여
판단 이유는 사생활이라 지적권법 변태사비
안다

4) 사생활

생의 것은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닌 인격생활 이용에
사생활이어서 인격의 사생활 또한 가능하여
판단 이유 있다. 이는 지적권법의 변태
사생활 가능하여 판단 이유 인격사생활
중의 변태

비판론

사생활은 지적권법 복수 없다

II 생의사

1. 사생활

甲의 그림의 지적권이 비침해받지 않게 된다

2. 甲이 지적권자의 저작물 - 저작

1) 저작물 (그림, 노래, (102, 268))

저작물은 저작물의 표상하는 대로, 저작물은

표상하는 대로 저작물의 변태하는 형식이나 권자는

없어진다

2) 저작물 (그림, 노래) - 저작

이 인격의 사생활이나 저작물 독자적인 저작물은



것이다

(2) 사안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기타의 바이트로만
신제품의 ~~종류~~ 수령권·유리권 우리 사안이
드러난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특정적인 변경

(3) 결론

우리 회사가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특정적인 변경

2

2. 신원(가)

1. 사유

우리 회사가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2. 특정적인

1) 특정적인 (22101)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2) 특정적인 (22102)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2

3) 특정적인 (22103)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특정적인 타당성 변경 바.



최소 2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은
특허법 제 29조 제 2항에 따른 실시예가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충족이 인정된다

4) 사안

상기 제 1항의 실시예는 (1)에서 제 1항의 실시예가
아니라면 2의 실시예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실시예는 물론, 배역하는 실시예의
차별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실시예가 아닌 경우
반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하여 충족이
인정된다

4) 결론

2의 범주는 2의 실시예와 관련된 표현은
차별적인 것이 (특히 (1)), 2의 실시예가 포함되는
2의 실시예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은

과잉보호가 없다!!